

여기서 안내된 내용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등을 요약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해당 법령을 반드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신청 안내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 해당 층, 해당 호실의 1개만 신청 가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분류	종류	내 용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건축연면적 230㎡ 미만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해당 호실의 신청면적이 230㎡ 미만

※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등록 불가

■ 등록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건물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는 것
-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치할 것

■ (결격사유)

☞ 「관광진흥법」 제7조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 유예 기간에 있는 자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본 사업은 **법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음
- 근무의 개념이 아니고 거주(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신청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명의로 신청해야 함
- 건축물대장상 객실로 사용할 주거 가능한 공간이어야 함(사무실 등의 용도는 불가, 객실 내부 조리시설 불가)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별지 제1호서식 참조

-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등록신청서 기재 내용 포함, 거주 인원 등)
- 시설개요(주택의 종류, 주택의 총면적과 사업장 면적, 객실수, 객실 제공형태, 외국어 안내서비스, 소화기 개수 및 배치장소,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시) 설치개수 및 위치 등)
 - ※ 3층 이상일 경우 완강기 설치 필수(지지대 설치 포함), 보일러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필수
- 영업계획(숙박 이외 제공 프로그램, 마케팅계획 등), 투숙객 관리계획(숙박일지 작성),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 체계 등

※ 별지 제2호서식 참조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지층,반지하,미답이문 안됨**)
 -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소유자의 동의 필수)
(※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사용용도를 기재 및 집주인 동의**) ※ 집주인 동의서 별첨 가능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소유자,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 동의서 ※ 별지 제3·4·5호서식 참조
 - 임대차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소유자 동의서 필요
 - 입주민 동의서는 인접세대(사업자 본인 거주지를 기준으로 **양옆 세대 및 직상·하층 세대**)를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 이상(1/2)**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함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대체 가능
(※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인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해당 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 별지 제6호서식 참조
- 대표자 본인이 방문 신청하지 못하면 위임장 ※ 별지 제7호서식 참조
 - 위임장에 위임하는 사업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현장 심사 시 점검사항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관리)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 면적과 실제 면적 동일 여부 확인
-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는 데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위생 상태가 청결할 것**
-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것
- 노후·불량건축물 해당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확인 할 것
(**당해연도 기준 30년 내**)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은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등록 불가**
- 민간임대주택은 **세무서에 세금관련 문의 필요**
-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반건축물 유무를 사전에 확인 할 것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관리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기타 외국인 관광객 안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타 법령상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여부 등
- 소방 설비 구비 관련 안내 사항 참조('2019.11.19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별난방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소화기 1대이상, 객실마다 휴대용 비상 손전등, 단독형화재경보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보일러실), 피난 안내도(영문) 비치, **3층 이상 시 완강기 설치(지지대 설치 포함)**

○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시 현장점검 진행

■ **유의사항**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을 받은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함
-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내국인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
- 성매매, 사행행위 등 다른 법에 따라 규율되는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지 말 것
- 소음, 소란, 매연 및 진동 등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 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불편, 고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위와 같은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법 제217조에 의한 주의 조치 의무에 반하여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 등이 발생할 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란 사실로 면책되지 아니함
-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로 등록되면 별도의 숙박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등록받지 아니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등록관청 : 서울특별시 중구청**

■ **수수료 및 처리 기간**

- 수 수 료 : 20,000원
- 처리기간 : 14일
- 등록 완료 후 등록면허세 납부 (면허세 납부 후 등록증 교부)

■ 문의 : 중구청 체육관광과 / ☎ 02-3396-4634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 종합휴양업: 12일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4일 ○ 그 밖의 관광사업: 5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영업개시 연월일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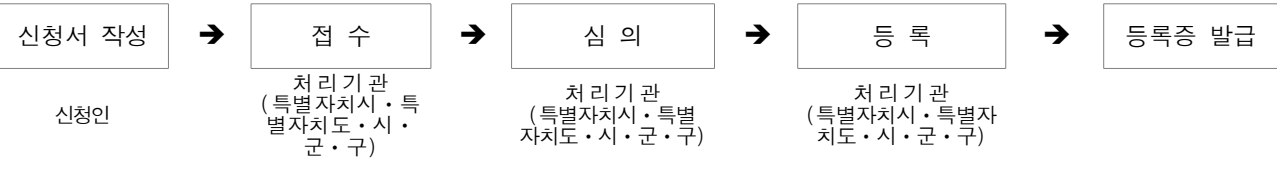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 20,000원 ○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 획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 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9.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0.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4.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가.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여행업 및 국제회의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

1. 사업 개요

- 상 호 : (한글) (영문)
- 소재지 :
- 사업자 인적사항

성명	유선번호	핸드폰	이메일
(한글) (영문)			

2. 시설물 현황(객실, 공용주방, 기타 서비스 공간, 관리시설 등)

구분	사업자 거주 방	객실	화장실	주방	기타 ()	기타 ()
개수	실	실	실	실	실	실

- 운영계획

1. 객실 수 및 요금계획

구분	싱글(1인실)	2인실		트리플 (3인실)	도미토리	한실(온돌)
		더블	트윈			
객실수	실	실	실	실	실	실
요금계획	원	원	원	원	원	원

2. 외국인관광객 서비스 계획

가. 외국어서비스 계획

- 사업자 및 동거가족의 수, 사용가능 외국어 및 구사 수준

성명	관계	구사 외국어	구사수준
	본인		

- 외국어 안내문 및 관광지도 등 비치 계획(□ 안에 √표시)

외국어 안내문	☐ 비치	☐ 미비치
외국어 관광지도	☐ 비치	☐ 미비치
기타 자체 홍보물	☐ 비치	☐ 미비치

나. 서비스 제공계획(□ 안에 √ 표시하고 상세 계획은 구체적으로 기재)

구분	상세 계획
조식서비스(필수)	
한국문화체험 제공	☐ 제공 ☐ 미제공
친목도모프로그램 운영	☐ 운영 ☐ 미운영
관광코스추천안내	☐ 안내 ☐ 미안내
기타()	

다. 위생관리 계획

객실관리	
침구류관리	

3. 홍보계획

☐ 자체 블로그 등 운영	☐ 에어비앤비 등 활용	☐ 서울스테이 활용	☐ 기타 ()
--------------------------------------	-------------------------------------	-----------------------------------	------------------------------------

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관련 생활 민원 관리계획

소음 · 진동	
쓰레기 혼합 배출/무단투기	
기타()	

- 안전관리계획

1. 기초소방설비 구비계획 및 현황

(피난안내도,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휴대용비상손전등, 안전매뉴얼 등)

스프링 클러	소 화 기	단독형 화재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경보장치	휴대용 비상손전등	피난 안내도	완강기	안전매뉴얼
총 개	총 개	총 개	총 개	총 개	총 개	총 개	총 개	구비/미구비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내 설치된 설비의 종류별 총 수량을 기재

2. 향후 보험가입계획

화재보험	☐ 가입	☐ 미가입
영업배상보험	☐ 가입	☐ 미가입
기타()	☐ 가입	☐ 마가입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소유자 동의서

업소명		
부동산표기(주소)		
임대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위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영업(등록)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입주민 동의서

- ☐ 업소명 :
- ☐ 주 소 :
- ☐ 입주민 동의

호(층) 성명 (서명)	호(층) 성명 (서명)
호(층) 성명 (서명)	호(층) 성명 (서명)
호(층) 성명 (서명)	호(층) 성명 (서명)
호(층) 성명 (서명)	호(층) 성명 (서명)
호(층) 성명 (서명)	호(층) 성명 (서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영업(등록)에 대하여 위와 같이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리사무소 동의서

☐ 업소명 :

☐ 주 소 :

공동주택인 _____ (공동주택명)

_____ 동 _____ 호에서 하고자 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해당 영업
활동이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필요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대체 가능

년 월 일

관리사무소장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대 상 자	성 명	(한글)	(영문)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휴대전화)
개인 정보 취급	상기 본인은 <u>관광사업자 등록, 허가, 지정</u> 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7조 및 제11조의 2에 따른 <u>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u> 에 동의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11조의2는 여행업만 해당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	서울시 중구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관광사업자 등록, 허가, 지정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뒷면) 1. 개인정보 수집 동의 2. 민감정보 수집 동의 3.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서울중부경찰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울시 중구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관광사업자 등록, 허가, 지정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성명(영문 포함),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수집·이용 목적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여부 확인
보유·이용 기간	준영구

※ 위 내용은 결격사유 조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관광사업자 등록, 허가, 지정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목	범죄경력, 한정·피한정 후견인 존재 여부
수집·이용 목적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여부 확인
보유·이용 기간	준영구

※ 위 내용은 결격사유 조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관광사업자 등록, 허가, 지정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목적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여부 확인
보유·이용 기간	준영구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울시 중구청장 귀하

위임장

☐ 업소명 :

☐ 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관계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관련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숙박 일지

(주소지, 사업자명 기재)

연 번	날 짜 ¹⁾	성 명 ²⁾	국 적	숙박일수	수령요금 ³⁾
1					
2					

1) 연도, 월, 일별로 쓰되, 최초 입실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예시) 2019년 12월 31일

2) 성명은 여권에 표기된 바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발음나는 대로 한글로 기재할 수 있음.
일행이 있는 경우, 대표자 성명 외 인원 수를 기입함.(예시: James Peters 외 3명)

3) 원화를 기준으로 하되, 외국화폐로 받은 경우 화폐명 또는 기호를 표시함. (예시: 20달러 또는 20\$)